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94781 손해배상(기)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이명희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변 론 종 결 2023. 2. 14.
판 결 선 고 2023. 3.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 설계, 예측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 설계·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C(구 D)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자이다.

나. E은 부천시 원미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3. 27.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 설립 직후인 2015. 3. 31. 위 'H'을 폐업하였다.

다. E은 위 개인업체인 'H'을 운영하던 2014. 12. 26.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I' 등 12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약 3525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2015. 6. 4.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E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582621 손해배상(지) 사건으로 2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절차에서 2020. 7. 20.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8. 4. 확정되었다.

1. 피고(= E)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20.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별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약식명령), 갑 제3호증(화해권고결정)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E이 경영 전반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E의 개인업체로서,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E이 운영하던 개인업체 'H'와 피고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며,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2015. 4. 1. E의 'H'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데,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E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E의 원고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나) 인정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다.

① E은 앞서 본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형제3699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5. 2. 11. 이미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회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갑 제6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이미 그 시점에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E의 개인업체 'H'과 피고 회사의 업종은 금형, 플라스틱사출, LED전등제작 등으로서 완전히 동일하고(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E은 본인의 영업권을 4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회사에 출자하였다(을 제3호증).

③ E의 개인업체 'H'에 근무하던 직원 6인 중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외에도 J, K, L, M은 'H' 폐업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8호증).

④ E의 배우자 성명불상인은 피고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다(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는 E 외에 O 1인만이 있는데, 이 O은 E과 가족관계(배우자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E의 개인업체 'H'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현재도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⑥ E의 개인업체 'H'의 장비 및 시설 일체는 모두 피고 회사로 이전되어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2021년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산은 유동자산(예금, 채권, 제품) 343,729,479원, 비유동자산(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임차보증금 등 기타 비유동자산) 840,229,065원, 합계 1,183,958,544원



인데(을 제6호증), 위 자산 내역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E이 출자한 것이거나 이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을 종합해 보면, E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H'과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심지어는 상호까지도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이 특별히 다른 주주의 존재나 주식비율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이를 전부 행사할 수 있는 등으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고 현재도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설립된 지 8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E이 피고 회사로부터 자신의 출자분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E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E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도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E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채무와 E의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데,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시효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장의 효과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미치지 않고, 원고가 2015. 6. 4.자 E에 대한 약식명령일부터 3년 내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시효중단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



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는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항변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위 주위적 청구원인에 따른 피고의 책임은 E의 책임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서(채무는 E의 채무뿐이다) 피고 본인의 채무가 E의 채무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